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2. 10 선고 2022가단116857 판결 [사해행위취소]

---

## 전 문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텍

담당변호사 김윤석, 조경운, 조한직, 강영태, 김교문, 변상걸

변 론 종 결 2023. 1. 20.

판 결 선 고 2023. 2. 10.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 청 구 취 지

1. 피고와 B 사이에 체결된 2017. 4. 15.자, 2017. 4. 30.자, 2017. 5. 15.자, 2017. 5. 16.자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64,950,000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 유

### 1.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 가. 당사자의 주장

##### 1) 피고의 본안 전 항변

가) 원고는 최초로 청구취지 기재 금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의 교부행위의 존재를 안 시점(2020. 11.경) 또는 적어도 피고로부터 아래에서 보는 관련 민사사건에서 이 사건 금원을 생활비로 지급받은 것이라는 답변서를 송달받은 시점(2021. 1. 20.)에는 이 사건 금원의 교부행위가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나) 이 사건 금원의 교부행위가 명의신탁인지 증여인지 여부는 법률적인 판단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단기 제척기간의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민법 제406조 제2항에 정한 1년의 단기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취소원인을 안 날은 관련 민사사건의 제1심 판결문을 원고 소송수행자가 송달받은 2021. 10. 8.경으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되었으므로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나. 관련 법리

1) 추징금 재판은 민사집행법에서 정한 집행절차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국세채납처분의 예에 따라 집행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477조 제3항, 제4항), 추징금 납부의무자가 납부를 피하기 위하여 한 재산의 처분 기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에 대하여는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할 수

있는데(국세징수법 제25조). 이와 같은 국세징수법 제25조에 의한 사해행위취소의 소도 민법 제406조 제2항에서 정한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어야 한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다288020 판결 참조).

2) 민법 제406조 제2항에서 정한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란 단순히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불리하게 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 행위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것까지 알아야 한다.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처분하였다는 사실을 채권자가 알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사해의사도 채권자가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262 판결 등 참조).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인 경우에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됨은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5098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되는 등 예외적으로 그 채권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그 단기 제척기간의 기산일 역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성립하는 시점과 관계없이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고 보아야 하고,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피고인에 대하여 추징을 명한 형사판결이 확정됨으로써 비로소 현실적으로 성립하게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1)의 관세법위반의 범행 및 공소의 제기에 따라 추징을 포함한 유죄 취지의 1심 판결이 2019. 1. 8. 선고된 이후로 원고가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한 2019. 1. 28. 무렵에는 ○○○이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배우자인 피고에게 증여하여 이 사건 추징금 채권의 회수가 어려워지는 등 채권자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길 수 있음을 원고가 알았던 것으로 볼 수 있어, 민법 제406조 제2항에서 정한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위 추징금채권이 그 이후인 2019. 5. 2. 현실적으로 성립되었더라도 2019. 1. 28.부터는 채권자취소권의 단기 제척기간이 진행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 추징을 명한 형사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추징금채권이 현실적으로

성립될 때까지 제척기간이 진행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다288020 판결 참조).

3)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체납자의 재산 처분에 관한 등기·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다247707 판결 참조).

다. 판단

#### 1)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3, 6, 8, 10, 12호증의 각 기재, 을 제1, 4 내지 6,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B는 피고의 남편이었던 사람으로, 1998. 12. 3.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2009. 8. 18. 이혼신고를 하였고, 다시 2016. 9. 23.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2019. 7. 25. 이혼신고를 하였다.

나) B는 '2016. 1.경부터 2016. 12.경까지 홍콩에서 매입한 금괴를 국내 환송구역을 거쳐 일본으로 밀반출한 후 이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소득을 얻었으므로, 납세의무가 발생하였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조세를 포탈하였다(이하 '이 사건 범죄사실'이라 한다)'는 조세범처벌법위반(조세포탈)죄로 수사를 받고 있었다.

다) 부산지방법검찰청 검사 C은 2018. 3. 29. 부산지방법원 2018초기551호로 B에 대한 추정보전신청을 하여, 2018. 3. 30. B의 압수물 반환청구권, B가 제3채무자 주식회사 D에 대하여 가지는 금융기관의 예금 및 장래 입금되는 예금 중 1,550,050,876,00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원(발생된 이자 포함)에 대한 반환채권을 가압류 하는 내용 등의 추정보전결정(이하 '이 사건 추정보전결정'이라 한다)을 받았다.

라) B는 2018. 10. 22. 이 사건 범죄사실 등으로 체포되었다.

마) B는 2018. 11. 16. 이 사건 범죄사실 등으로 부산지방법원 2018고합127 등 관세법위반죄 등으로 기소되었고 2019. 1. 11. 징역 2년 6월과 1,795,124,056,000원을 추징하는 형을 선고받았다.

바) B는 위 제1심판결에 대하여 부산고등법원 2019노56호로 항소하였는데 2019. 7. 24. 징역 1년 6월과 1,795,124,056,000원을 추징하는 형을 선고받았다.

사) B는 위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대법원 2019도11489호로 상고하였는데 2020. 1. 30.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아 위 항소심판결이 확정되었다.2)

아) 검찰서기보 E이 2020. 11. 3. ‘피고가 2016. 5. 24.부터 2017. 5. 17.까지 출금한 합계 721,616,553원의 원천이 남편 B가 금괴밀수를 하면서 벌어들인 범죄수익금인 현금으로 추정되므로 해당 부동산의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B이며, B를 대위하여 위 반환채권을 가압류하고 피고를 상대로 대위소송을 제기함이 상당함’이라는 내용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검사 F에게 보고하였다.

자) 검찰서기보 E이 2020. 11. 16. ‘2015. 11. 2.부터 2019. 7. 22.까지 기간 동안 피고의 D 계좌에 CD입금 항목으로 1,426,800,000원이 입금됨’이라는 내용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검사 F에게 보고하였다.

차) 원고는 2020. 12. 14. 피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가합115239호(이하 ‘관련 민사사건’이라 한다)로 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카) 피고는 위 소송에서 2021. 1. 20.자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피고는 2017. 5. 17. 이후에도 2018. 3. 17.까지 B로부터 계속 돈(생활비)을 지급받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타) 법원은 2021. 9. 2. 관련 민사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파) 원고는 위 제1심판결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21나2039691호로 항소하였는데 2022. 4. 21.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

하) 원고는 위 항소기각판결의 선고에 앞서 2022. 4. 1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선 법리를 보태어 보건대, 이 사건 추정보전결정에 의하여 가압류된 채권에 B의 예금채권이 포함되어 있었던 점, 검사는 B에게 위 예금채권과 압수물 반환청구권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추정보전결정을 신청한 2018. 3. 29. 무렵에는 B가 채무 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금원을 배우자인 피고에게 증여하여 이 사건 추징금 채권의 회수가 어려워지는 등 채권자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길 수 있음을 알았던 것으로 볼 수 있어, 민법 제406조 제2항에서 정한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에 해당한다.

나) 이와는 견해를 달리 하더라도 늦어도 이 사건 금원의 인출 기간과 내역이 포함된 수사보고서가 작성, 보고된 2020. 11. 16.에는 원고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다) 원고가 B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금원의 교부를 명의신탁으로 파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인식에 따라 제척기간의 준수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

라) 당사자가 변론종결 후 주장·증명을 제출하기 위하여 변론재개신청을 한 경우 당사자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일지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법원이 변론을 재개하고 심리를 속행할 의무가 있는 경우는 변론을 재개하여 당사자에게 그 주장·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않은 채 패소판결을 하는 것이 민사소송법이 추구하는 절차적 정의에 반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가령 변론재개신청을 한 당사자가 변론종결 전에 그에게 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사정으로 주장·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하였고 그 주장·증명의 대상이 판결의 결과를 좌우할 만큼 주요한 요증사실에 해당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0다290538 판결 참조), 관련 민사사건의 재판부가 원고의 변론재개신청과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원고가 별도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함에 있어서 단기 제척기간을 준수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민법 제406조 제2항에 정한 단기 제척기간을 준수하지 못해 부적법하다.

##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판사 송승용

1) 이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어 비실명화 처리하였음

2) 이하 형사판결에서 확정된 원고의 B에 대한 추징금 채권을 '이 사건 추징금 채권'이라 한다.